

노무0510 직원연봉규정시행세칙

2001. 12. 19 제정
2002. 12. 20 전면개정(1차)
2003. 12. 24 부분개정(2차)
2004. 11. 30 부분개정(3차)
2004. 12. 27 부분개정(4차)
2005. 6. 21 부분개정(5차)
2006. 3. 3 부분개정(6차)
2008. 3. 10 부분개정(7차)
2008. 12. 29 부분개정(8차)
2009. 3. 26 부분개정(9차)
2009. 12. 29 부분개정(10차)
2010. 12. 09 부분개정(11차)
2010. 12. 16 부분개정(12차)
2011. 2. 7 공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원연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연봉의 운영

제2조(기본연봉의 운영) ①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정기인상률은 거래소의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 12. 16 개정)

② 각 직급별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적용하는 차등기준은 별표1과 같다.(2010. 12. 16 개정)

③ 규정 제8조에서 정한 승격시 기본연봉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승격전 기본연봉에 반영하는 직급별 조정비율은 별표1-1과 같다.(2010. 12. 16 신설)

제3조(연봉월액의 감액)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근태계산기간 중에 결근·직위해제·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와 같이 연봉월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2010. 12. 09 개정)

제3장 연봉외수당의 운영

제4조(연봉외수당) 연봉외수당은 결근, 휴직, 장기위탁교육, 무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2010. 12. 09, 2010. 12. 16 개정)

제4장 성과연봉 및 직무연봉

제5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기존 기본상여금과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인센티브상여금으로 구성되며,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은 별표4와 같다. (2005. 6. 21, 2010. 12. 16 개정)

② 성과연봉은 6월 및 12월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2010. 12. 16 개정)

③ 성과연봉의 근태계산기간·지급기준일·신규채용자의 지급률에 관한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④ 성과연봉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공상휴직자는 포함)로 하며, 퇴직·정직·휴직중인 직원은 제외한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퇴직전년도 및 퇴직연도 분의 정부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해당 정부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지급한다.(2010. 12. 09 개정)

⑤ 성과연봉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성과연봉 지급의 특례)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포상 또는 징계 등 성과연봉 관련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한다.(2010. 12. 09 개정)

제7조(직무연봉) (2010. 12. 16 개정) ① 규정 제12조의 직무연봉은 해당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치에 따라 변동되며, 직무연봉은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② 직무연봉의 등급별 지급액은 별표 4-1과 같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직무연봉 대상자가 직무연봉 지급대상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직무연봉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상위직위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 동안 해당 상위직위 직무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퇴직금

제8조(평균임금) ① 규정 제13조에 따른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다음 각호의 해당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한다.

1.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된 연봉월액, 연봉외수당. 단, 자가운전유지비 지급대상은 자가운전유지비가 아닌 교통보조비 기준금액을 적용(2010. 12. 09, 2010. 12. 16 개정)
2. 퇴직일로부터 최종 1년간 지급받은 성과연봉 합계의 12분의 3 해당액(2010. 12. 09, 2010. 12. 16 개정)
3. (2008. 3. 10 삭제)

② 사망 또는 퇴직한 자 중 평균임금산정기간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급여가 감액 또는 불지급되었을 때에는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2008. 3. 10 개정)

1. 질병휴직 및 질병결근
2. 산전후휴가 및 취업규칙 제32조의 휴직
3. 1개월 이상의 국외 출장 및 교육
4.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1개월 이상의 동원(2010. 12. 09 신설)
5. 기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직전 3개월간의 급여(제1항의 해당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각각 감액되거나 불지급되었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008. 3. 10 신설)

가. 사망 또는 퇴직일자를 기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감액 또는 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감액사유가 평균임금산정기간 이전부터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 발생일을 기준한다.

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1개월단위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었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평균급여와 퇴사전 최종 1년간 지급받은 성과연봉을 기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임금은 동 사유 발생직전의 직무를 기준하여 동 기간 중의 당해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정상근무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이 동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다만, 대외파견기간 중 임금을 당사 연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준하며 공상자 중 공상 당시의 평균임금이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공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한다.(2008. 3. 10, 2010. 12. 09, 2010. 12. 16 개정)

1. 대외파견자로서 임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파견기관에서 부담하는 직원의 파견기간
2. 공상 또는 공상휴직기간

⑤ 무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 퇴직하는 직원의 평균임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금품수수, 횡령, 배임, 공금 유용 및 부당이득 수수의 행위로 무보직 또는 직위해제당한 자가 아닌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 자의 평균임금은 무보직일 또는 직위해제일을 퇴직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2010. 12. 09, 2010. 12. 16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산정액이 퇴직당시의 연봉월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연봉월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008. 3. 10 신설)

제6장 연봉특례

제9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2004. 12. 27, 2010. 12. 16 삭제)

② (2004. 12. 27 삭제)

제10조(연봉계약) ①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6에서 정한 연봉제 적용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연봉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개인별 연봉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개별 서면통보로 갈음한다.

제7장 보 칙

제11조(보칙) ① 이 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1. 4. 2부터 시행한다.
- ② (기본연봉 구성) 규정 제3조 제2호의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에 정한 기본급, 직능급, 전력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및 상여금 중 기본상여금과 가족수당지급규정에 정한 가족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2. 12. 23)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 10. 16부터 시행한다.
- ② (기본연봉 구성) 규정 제6조의 기본연봉은 구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본급, 직능급, 전력거래수당, 시간외근무수당(23H 해당분), 연·월차수당, 특수작업수당(3만원)과 가족수당지급규정의 가족수당, 기타 연구비(3만원)를 포함하며, 직원연봉규정에서 정하는 기본연봉(단, 연봉월액의 63% * 3에 해당하는 금액 제외)과 시간외근무수당(15H 해당분), 연·월차수당을 포함한다.
- ③ (경과조치)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표준연봉등급은 2002. 10. 16 현재 직등호를 기준으로 부여하되, 2002. 12. 16 정기 승급시에는 직전 승급일·승호일 및 입사일로부터 2002. 12. 16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승급한다.

부 칙(2003. 12. 24)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3. 12.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30)

(시행일) 이 세칙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4 상여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기본 상여금의 경우는 2004. 9. 1부터, 인센티브상여금의 경우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7)

(시행일) 이 세칙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3)

(시행일) 이 세칙은 2005.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10)

(시행일) 이 세칙은 2007. 12.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9)

(시행일) 이 세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6)

(시행일) 이 세칙은 2009.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23)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09)

①(시행일)이 세칙은 2010. 11. 16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2008년 이전 입사자에 대한 퇴직 이후 정부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시, 평가 해당년도 대졸 신입직원을 기준으로 한 정부경영평가성과급 1년분을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0. 12. 16)

- ① (시행일)이 세칙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4 성과연봉 산정기준은 2011년도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시부터 적용하며, 2010년도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이전 시행 세칙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② (연봉 구성)1. 기본연봉은 구 연봉규정에서 정한 기본연봉, 기술수당 일부(2직급)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직무연봉은 1직급의 경우 구 연봉규정에서 정한 직책수당, 자가운전유지비, 급식보조비, 기념일지원비 및 기존 기본상여금의 일부로 구성하며, 2직급의 경우 구 연봉규정에서 정한 특수작업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기념일지원비, 기술수당 일부 및 기본상여금 일부로 구성한다.
3. 성과연봉은 구 연봉규정에 의한 기본상여금의 일부와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구성한다.

(별표 1) (2010. 12. 16 개정)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기준

인사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1직급	@ + 1.5%	@ + 1%	@	@ - 1%	@ - 1.5%
2직급	@ + 1.0%	@ + 0.5%	@	@ - 0.5%	@ - 1.0%

1. @는 정기인상률을 말한다.

(별표 1-1) (2010. 12. 16 신설)

승격시 직급별 기본연봉 조정비율

구분	1직급(을)⇒1직급(갑)	2직급⇒1직급(을)	3직급⇒2직급
인상율	1.5%	2%	3.5%

(별표 2)

연봉월액에 대한 감액기준

1. 결근·직위해제의 연봉월액에 대한 감액기준 (2008. 12. 29, 2010. 12. 09 개정)

구분	사사유계결근		질병결근	직위해제	
	10일 이내	11~30일		3월이내	3월초과
감액사유 1일당 연봉월액에 대한 감액률(%)	0.3	3.0	0.2	1.0	2.0

2. 징계처분자(감봉)의 연봉월액에 대한 감액기준 :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감액총액은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주) 1. 질병결근(90일 초과), 정직 기간 중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무계결근 중에는 보수월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0. 12. 09, 2010. 12. 16 개정)

2. 직위해제는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2의 제1항을 말한다.(2003. 12. 24, 2008. 3. 10, 2010. 12. 09 개정)

(별표 3) (2010. 12. 16 삭제)

(별표 4) (2010. 12. 16 개정)

성과연봉 산정기준

1.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은 연간 기본연봉과 직무연봉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의 60%로 한다. 다만, 기본연봉과 직무연봉은 전년도 12월 15일의 기본연봉과 직무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2. 3직급에서 2직급으로 승격하여 전년도 12월 15일의 기본연봉과 직무연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승격 전 기준봉급과 기본상여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1) (2010. 12. 16 신설)

직급별 등급별 직무연봉

구분	1직급(갑)	1직급(을)	2직급
A	26,275천원	15,216천원	13,074천원
B	24,875천원	14,116천원	11,974천원
C	23,475천원	13,016천원	10,874천원

1. 1직급(갑) 팀원 및 상담역은 최저등급(C)의 50%, 1직급(을) 팀원 및 상담역은 최저등급(C)의 90%, 2직급 상담역은 최저등급(C)의 90%를 적용한다.

(별표 5) (2010. 12. 16 삭제)

(별표 6) (2010. 12. 09, 2010. 12. 16 개정)

연봉제 적용 동의서

- 소속 :
- 직 급 :
- 성 명 :

1. 상기 본인은 전력거래소 연봉제의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본인에 대한 연봉제 적용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① (전체 해당사항) 본인은 개정되는 직원연봉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연봉 지급 방법에 대하여 동의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②-1 (1직급 해당사항) 기존 연봉규정의 기본급을 개정 직원연봉규정의 기본연봉으로 편입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 ②-2 (2직급 해당사항) 기존 연봉규정의 기본급 및 기술수당(교대근무직원의 경우, 일부)을 기본 연봉으로 편입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 ③ (1직급 해당사항) 개정 직원연봉규정에서 신규로 직무연봉이 설정됨에 있어 기존 연봉 규정의 직책수당, 자가운전유지비, 급식보조비, 기념일 지원비 및 기본상여금(일부)이 직무연봉으로 편입되어 직무에 따라 차등지급 받는 것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④ (2직급 해당사항) 개정 직원연봉규정에서 신규로 직무연봉이 설정됨에 있어 기존 연봉 규정의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특수작업수당, 기술수당(교대근무직원 해당), 기념일 지원비 및 기본상여금(일부)이 직무연봉으로 편입되어 직무에 따라 차등지급 받는 것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⑤ (전체 해당사항) 본인은 기존 기본상여금(일부) 및 인센티브상여금이 개정 직원연봉규정에서 성과연봉채원으로 구성되는 것에 동의하며, 거래소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개정 직원연봉규정에 의한 직원간 상대적인 연봉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연봉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본 동의서가 매년 체결하는 연봉계약서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는데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